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2 . 18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신영선)

가. 제 안 이 유

- '99.12.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주행세 및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 주민세, 농지세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창군세 조례중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 요 내 용

- 주행세 신설(안제3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정(안제9조)
-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개정(안제21조)
-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신설(안제22조의2)
-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1000분의 32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며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에 의한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건축물 신축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자동차세의 매매증여에 따른 양도·양수자의 일할 계산규정 신설과 기존 1000원 미만의 미과세 징수규정을 2000원 미만으로 조정,농지세의 세율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상위기관의 준칙안에 따른 긴급 개정요구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주행세를 신설한 이유?	○ 관세압력에 따라 2000cc이상의 차가 외국 통상압력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되어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주행세 1000분의 32로 한 이유는?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감소에 따라 감소의 세율을 고려하여 세율을 정한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기 바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끝 .